

일본,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요

박 기 환*

일본 농림수산성은 소비자 니즈에 정확히 대응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전업농을 육성·확보하고, 전업농 중심의 안정적 채소 생산·출하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도·수급안정대책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새로운 대책의 기본적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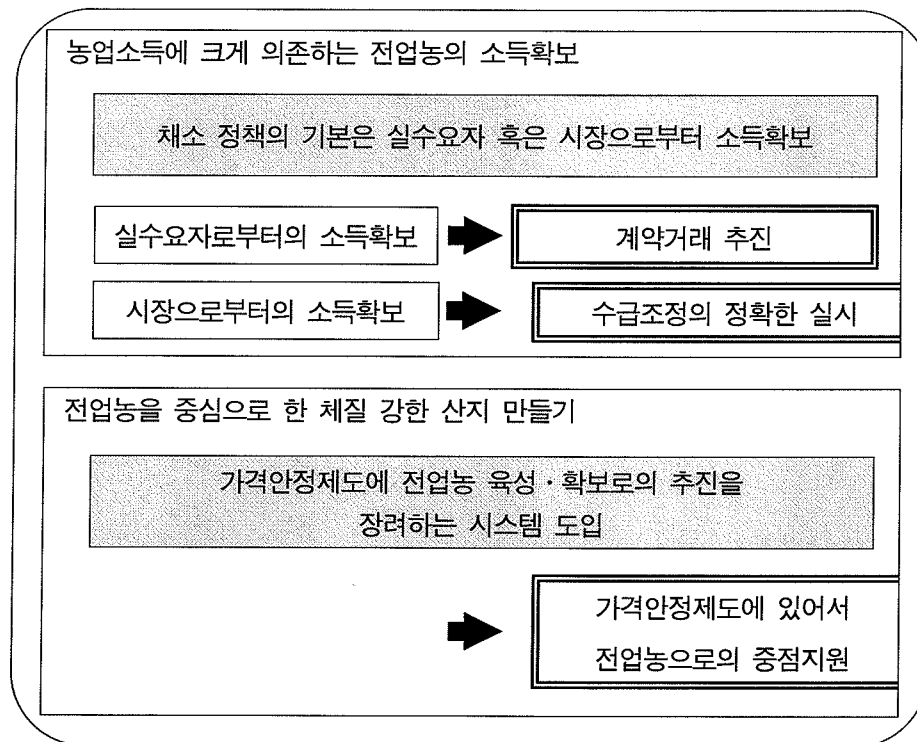
일본의 채소농업은 산지의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가공·업무용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니즈에 정확히 대응하는 전업농의 육성·확보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채소 생산·출하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채소농업에서는 소비자 니즈에 따라 채소를 시장이나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을 시행할 산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전업농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약거래나 수급조정의 정확한 실시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체질이 강한 산지를 만들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hwan@krei.re.kr 02-3299-4331

위해 전업농 육성·확보로의 추진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가격안정제도에 도입
하며, 이러한 새로운 대책은 2007년부터 실시한다.

그림 1 채소 가격안정제도·수급안정대책 수정의 기본적 발상



2. 수정된 대책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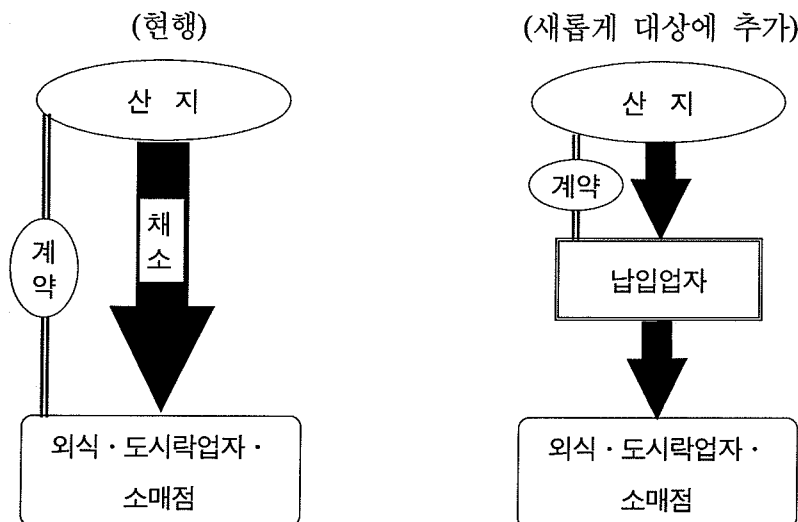
2.1. 계약거래 추진

전업농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예측이 가능한 계약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계약을 추진하는 산지의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계약거래 추진이 쉽도록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를 강화한다.

(1) 계약거래 대상자 수정

중간업자(판매점 등에 채소를 납품하고 있는 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거래도 새롭게 제도의 대상으로 한다. 즉 외식이나 소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

그림 2 제도 대상 계약거래의 형태



(2) 사업 대상 채소의 명확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껍질 벗김, 심 제거 등)하거나 점포에 그대로 진열하기 위한 처리(두개로 분리, 패킹 등)를 사전에 산지에서 행한 경우의 채소도 제도의 대상이 된다.

(3) 보전 조건 개선(수량확보형)

정량정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경작 완료시 계약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①시장 출하예정 물량의 출하처를 변경해 계약처에 납입한 경우, ② 시장에서 구입해 계약처에 납입한 경우 보전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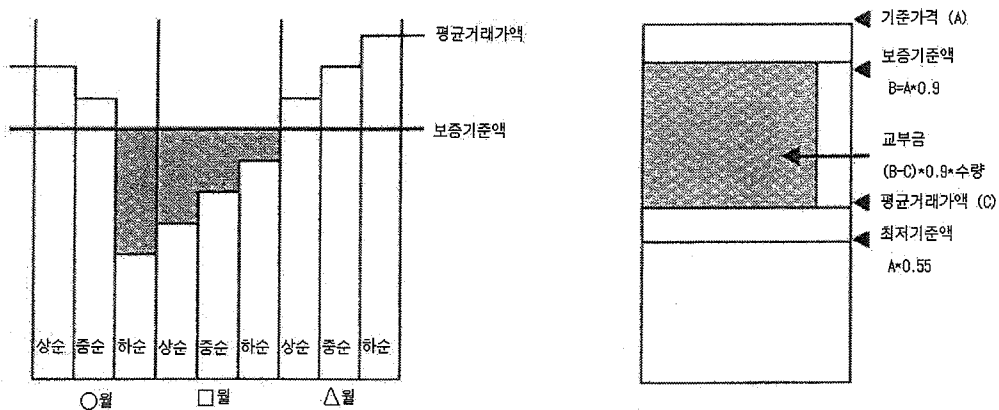
- 보전 대상이 되는 가액의 상한(구입한도가액) 인상(① 및 ②)
- 보전 대상으로 가능한 수량(교부예약수량) 인상(① 및 ②)
- 보전율 인상(①)

	현행	수정
구입한도가액	계약가액의 150%	생산자 선택에 의해 계약가액의 200, 300, 400%로 하는 것도 가능
교부예약수량	계약수량의 30%	계약수량의 50%
출하처 변경 보전율	50%	70%

(4) 거래가격 설정기간 수정(가격하락형)

일정 기간마다 시장가격에 연동해 가격을 수정하는 계약에 대해 거래가격 설정기간(현행 10일 이내)을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거래기간 중 3회 이상의 거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3 현행 가격하락형의 틀



2.2. 수급조정의 정확한 실시

시장에서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출하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할 시에는 수급조정을 정확히 추진해 시장가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지가 수급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가격안정제도와 수급안정대책과의 연휴 강화를 도모한다.

(1) 수급조정대책으로의 참가촉진

수급조정대책을 행하고 있는 품목(수급조정대상품목 : 양배추, 무, 양파, 당근, 배추, 양상추)에 대해 수급조정대책에 참가하는 산지와 참가하지 않는 산지와와의 보전율에 있어 10%의 격차를 설정한다. 수급조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국채소수급조정기구로의 자금각출이 필요하다.

(2) 긴급수급조정단가 수정

가격 하락으로 산지폐기할 경우의 교부단가를 일률적으로 ‘평균가격의 40%’로 한다. 이로 인해 중요 채소 이외의 지정채소 교부단가는 현행 ‘평균가격의 20%’에서 ‘평균가격의 40%’로 인상된다.

표 1 긴급수급조정단가 수정

품 목	현 행	수 정
양배추, 가을·겨울무, 양파, 가을·겨울배추	40%	40%
봄·여름무, 당근, 봄·여름배추, 양상추	20%	

(3) 최저기준액 수정

가격안정제도의 최저기준액을 현행 55%에서 60%로 인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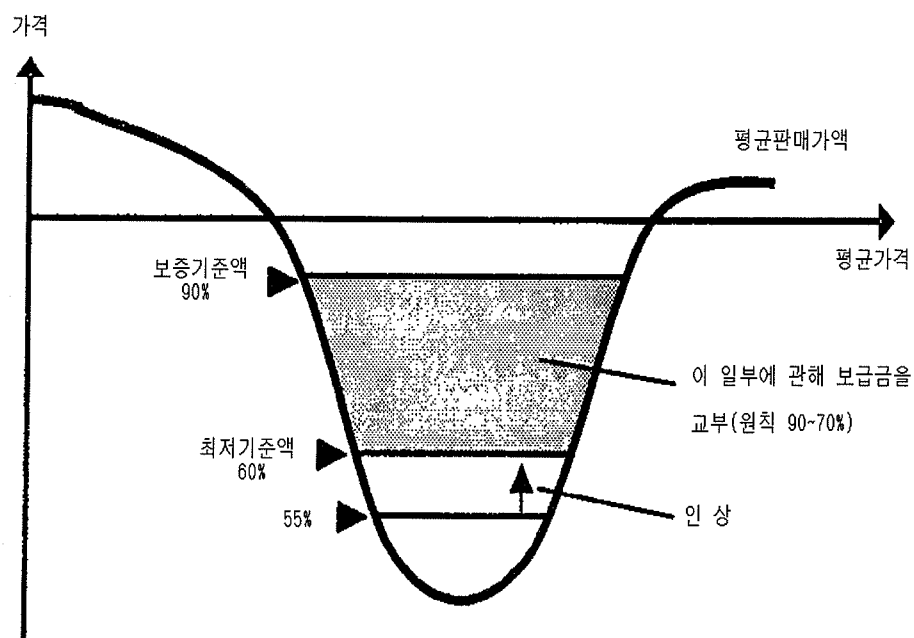
(4) 계획적 출하 촉진

공급계획에 따라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안정제도의 교부금에 차이를 설정한다.

① 계획과 같이 출하하면(공급계획의 $\pm 20\%$ 미만의 경우) 보급금이 전액 교부되지만, 계획대로 출하하지 않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교부율이 삭감된다.

② 공급계획의 $\pm 5\%$ 미만 범위에서 출하를 행할 경우 가격하락 시 통상의 보급금에 추가해 특별보급교부금(+10%)이 교부된다.

그림 4 가격안정제도의 틀



2.3. 가격안정제도에 있어 전업농으로의 중점 지원

(1) 중점지원 대상

채소생산은 전업농 고령화·감소 등으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채소 생산자 중에서도 특히 ‘장래에도 안정적·계속적으로 채소 생산을 행하는 것이 예상되는 자(이하 안정적·계속적 생산자로 지칭)’를 육성·확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안정적·계속적 생산자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면서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 생산자로서 인정농업자의 이미지와 겹친다. 이 때문에 안정적·계속적 생산자는 인정농업자를 기본으로 하며, 인정농업자에 준하는 자를 특별히 인정한다.

(2) 중점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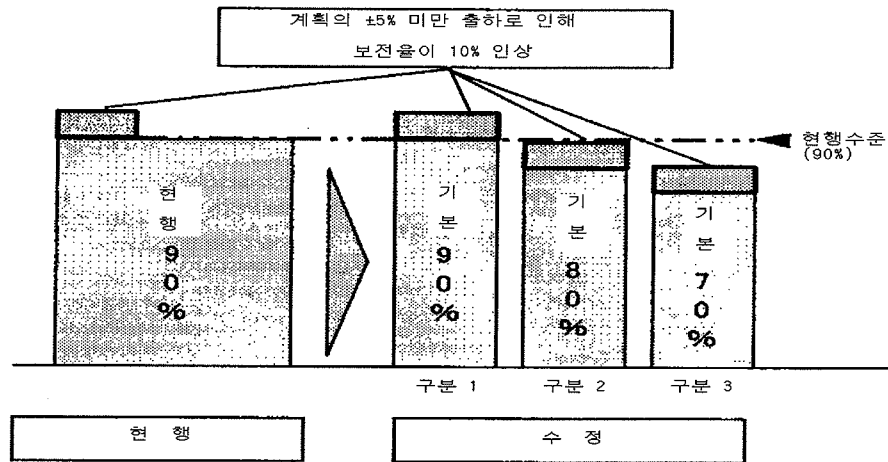
산지를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안정적·계속적 생산자의 육성·확보와 계획적인 생산·출하로의 추진 상황에 따라 산지를 3개로 구분해 분류하고, 산지마다 보전율에 격차를 둔다. 구체적인 산지구분 요건과 보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산지 구분과 보전율

산지의 요건	보전율	
	기 본	계획적출하달성
1. 이하의 전체를 만족하는 산지 ① ‘안정적·계획적 생산자’의 재배면적 비중이 60% 이상일 것 ② 과거 3개년간 계획과 같이 출하를 행하고 있을 것(과거 3개년간 공급계획의 120% 이상 출하하고 있지 않을 것, 3년마다 수정 실시)	90%	100%
2. ‘안정적·계획적 생산자’의 재배면적 비중이 40% 이상이며, 상기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	80%	90%
3. 상기의 2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 ‘안정적·계획적 생산자’의 재배면적 비중이 40% 미만 혹은 산지강화 계획을 책정하고 있지 않는 산지	70%	80%

또한 중요 채소 이외의 지정채소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출하가 달성된 경우에는 특별보급교부금(보전율 : +10%)이 교부되지만, 이 특별보급교부금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조정대상품목에 대해서 수급조정대책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 특별보급교부금



참고자료

일본농림수산성 “野菜の価格安定制度・需給安定対策の見直しについて” 발췌정리